

대학 비대면 수업컨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 안내

[2021.5.13. 기획혁신팀]

□ 개요

○(사업기간) 2021.4.1. ~ 12.31.(9개월)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확산에 따라 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대학 원격수업 질 제고 및 디지털기반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

* 비대면 수업 원격수업 모형 연구 개발 참여, 비대면 수업 콘텐츠 제작 등

○(지원기간/규모) 2021년(한시) / 418.52억원(4년제 286.34억원, 전문대 132.18억원)

○(지원대상)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한 총 360교(4년제 190교, 전문대 128교, 대학원대학 42교)

< 재학생(정원내·외) 규모별 지원대상교 수 >

구분	1,000명 미만	1,000 ~ 2,999명	3,000 ~ 4,999명	5,000 ~ 6,999명	7,000 ~ 9,999명	10,000 ~ 14,999명	15,000 ~ 19,999명	20,000명 이상	합계
교육대학			10						10
대학교	24	15	22	21	40	24	14	18	178
대학원대학	42								42
산업대학				2					2
소계	66	15	32	23	40	24	14	18	232
전문대학	17	43	38	26	4				128
합계	83	58	70	49	44	24	14	18	360

※ '20.4.1. 교육기본통계 기준, 부설대학원은 일반대학원만 재학생 수에 포함

□ 사업운영

○(추진체계)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대학·전문대학이 추진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 등 사업 총괄

- (사업위탁기관*) 시행계획(대학별 배치인원, 가배정액 등 포함) 수립, 사업비 대학에 교부, 집행 현황 점검 및 환류 등 사업 집행·관리

* (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대학)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지원인력 채용 등 사업 추진, 실적 보고(집행보고서 작성·제출)

○(사업비 집행) 사업비는 원격교육 질 제고를 위한 대학별 지원인력 인건비로 사용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활용

- 시간제 근로계약 등을 활용, 기간 내 배정 예산 전액 집행

○(일자리 운영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에 따른 사업운영 및 대학별 채용현황 정보 관리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사업비 관리) 사업비는 기관(총장)에 총액으로 교부하며, 교비(대학) 회계 내 별도 계정으로 관리

※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21.2월 시행) 준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정·운영하는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 예산 배부 이전에 집행한 비용(고용보조금, 사업위탁기관 사업관리비)은 사업목적 및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사후 사업비로 정산 가능

- 사업비는 '21년 12월 말까지 집행 완료

- 사업종료 시 대학은 결과보고서(실적, 우수사례, 사업비 집행내역 포함)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수급 등의 경우 사업비 환수

□ 사업예산

- (예산지급) 사업신청 대학에 한하여 배치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배치인원) 재학생 규모에 따라 1차적으로 배치하고, 사업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인한 잔액 발생 시 원격강의 개설 수 및 대학 여건 등을 고려하여 초과 수요가 있는 대학에 추가 배분

< 재학생 규모별 전문인력 배치인원(안) >

재학생 규모 (’20.4.1. 통계 기준)	대학 원대학	1,000명 미만	1,000 ~ 2,999명	3,000 ~ 4,999명	5,000 ~ 6,999명	7,000 ~ 9,999명	10,000 ~ 14,999명	15,000 ~ 19,999명	20,000명 이상
교별 배치인원(명)	2	4	6	8	10	12	13	14	16

- (1인당 월 지원금) 2,325,083원(2,583,426원*의 90%)

※ 보조(90%), 대학 대응투자(10%)

* 2,583,426원 = 2,330,350원(월 인건비) + 253,076원(사업자부담)

※ 단, 사업자부담금은 대학별 교직원 규모 등이 상이하므로 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임금 단가 기준) 시급 11,150원 × 209시간

- (채용기간) ’21년 5월부터 만 6개월간 채용(단, ’21년 12월 말까지 집행 완료)

□ 사업신청

- (신청서내용) 다음을 포함하여 제출

- ① 지원인력의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임금 등* 근로 계약 조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노동부 배포 ‘표준근로계약서’ 항목 포함

- ② 지원인력 채용방식 및 일정 등 채용계획

- (절차) 워크넷, 대학 홈페이지 등에 채용공고를 실시하는 등 공개 채용 방식에 의하며, 대학별 자체규정에 따라 채용 세부절차 진행

※ 채용 시 일모아시스템 가입 및 활용(모집공고, 신청자, 선발자 관리 등)

- (자격) 멀티미디어 등 자격증 소지자, 콘텐츠 기획·개발·제작 분야 등 원격교육 관련 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중 대학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채용
- (채용대상)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만19세~34세)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 절차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다른 연령대 지원자 선발 가능

< 인력 채용 방법 >

- 관계 법령, 사업 기본계획·시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적으로 결정
- ※ (예시) 정해진 예산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 1인을 채용하는 대신 ‘1일 4시간, 주5일’ 근무자 2인을 채용
- 과도한 분할 채용 금지

③ 사업 세부내역별, 월별 집행액 등 사업 집행계획

○(제출기한) 2021. 5. 24.(월) 까지

○(제출방법) 사업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전자공문 제출

□ 사업 추진일정

<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추진 일정(안) >

추진 내용	2021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사업 기본 계획 수립 (교육부)	수립 ▼											
사업 시행 계획 수립 및 예산배부 (사업위탁기관)	수립 및 사업비 교부 ▼			사업 관리 ▼								
지원인력 채용 (대학)		채용 ▼										
사업 관리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 관리 ▼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 QnA

대학혁신지원실

기획혁신팀

2021.5.18.(화)

□ 예산

1. 신청인원에 따라 국고 보조액을 얼마나 신청해야 하는가?

- 아래표를 참고하여 신청 인원에 따른 국고 보조액을 신청

<신청 인원별 사업비>

(단위: 원)

신청인원 (명)	국고 보조액(90%)(A)	대응 투자액(10%)(B)	합계(사업비 총액)(C=A+B)
1	13,950,500	1,550,056	15,500,556
2	27,901,000	3,100,112	31,001,112
3	41,851,501	4,650,167	46,501,668
4	55,802,001	6,200,223	62,002,224
5	69,752,502	7,750,278	77,502,780
6	83,703,002	9,300,334	93,003,336
7	97,653,502	10,850,390	108,503,892
8	111,604,003	12,400,445	124,004,448
9	125,554,503	13,950,501	139,505,004
10	139,505,004	15,500,556	155,005,560
11	153,455,504	17,050,612	170,506,116
12	167,406,004	18,600,668	186,006,672
13	181,356,505	20,150,723	201,507,228
14	195,307,005	21,700,779	217,007,784
15	209,257,506	23,250,834	232,508,340
16	223,208,006	24,800,890	248,008,896
17	237,158,506	26,350,946	263,509,452
18	251,109,007	27,901,001	279,010,008
19	265,059,507	29,451,057	294,510,564
20	279,010,008	31,001,112	310,011,120
21	292,960,508	32,551,168	325,511,676
22	306,911,008	34,101,224	341,012,232
23	320,861,509	35,651,279	356,512,788
24	334,812,009	37,201,335	372,013,344
25	348,762,510	38,751,390	387,513,900
26	362,713,010	40,301,446	403,014,456
27	376,663,510	41,851,502	418,515,012
28	390,614,011	43,401,557	434,015,568
29	404,564,511	44,951,613	449,516,124
30	418,515,012	46,501,668	465,016,680

2. 배정인원은 전일제 기준인가?

- 전일제 기준이며, 1일 8시간, 1개월 209시간 근로 기준임

3. 배정인원을 모두 신청해야 하는가?

- 학교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신청 가능. 다만, 배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수에 대한 지원은 타 대학 신청 현황을 함께 고려하여 예산 잔액 발생 시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확정 및 안내 예정

4. 10% 대응 투자액은 인건비 외에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는가?

-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 사용 불가능

5. 10% 대응 투자액은 지자체 보조금이나 다른 국고사업비로 사용해도 되는가?

- 불가능. 교비로 대응 투자

6. 시급 11,15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책정 금액보다 적게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가?

-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이상부터 최대 시급 11,150원 사이에서 조정

7. 시급 11,150원보다 많게 책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 가능.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대응 투자액과 별도로 대학에서 부담(초과분에 대한 사업자부담금도 대학에서 부담)

8. 시급을 낮춰서 채용 시 6개월 이상 채용해도 되는가?

- 가능. 다만 계약종료일이 사업 종료일인 2021년 12월 31일을 넘을 수 없음

9. 4대보험은 적용은 필수인가? 조교형태 근로장학금으로 지급해도 되는가?
- 4대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15시간 미만 근로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4대 보험을 반드시 적용. 장학금이 아니라 근로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
10. 대학 대응 투자액 10%가 4대 보험을 포함한 금액인가?
- 대응 투자액 10%는 대학 상황에 맞게 인건비만 집행하거나, 사업자 부담금으로만 집행하거나, 인건비와 사업자부담금을 함께 집행하거나 상관없음. 다만, 월 인건비와 4대 보험(사업자 부담금)을 합한 사업비 총액의 10%를 교비로 대응 투자해야함
11. 대응 투자액이 거의 사업자 부담금으로 편성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부담금이 10%보다 적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나머지는 인건비에서 대응 투자하면 됨. 사업비 총액에서 10% 대응 투자는 필수 사항임
12. 인원 미채용 및 학교 자체 시급 조정 등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대학에 별도의 불이익 또는 추후 사업 신청 시 제한사항은 없는가?
-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음. 하지만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13. 12월 31일까지 집행완료인 것이 지출마감을 의미하는가?
- 12월 31일까지 e나라도움에서 집행등록 후 모든 건에 대한 지출 완료. 2022년 1월 1일 이후 집행등록 및 지출 불가
14. 사업 종료 후 1명의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9:1로 나누어 반납하는가?
- e나라도움에서 국고는 반납의 대상이지만, 대응투자액은 반납대상이 아님. 단, e나라도움에서 정산마감 할 때 총 금액의 10% 이상 대응투자(자부담)이어야 마감 가능

15. 대응투자액 10%를 넘기려면 월급을 2,340,800원으로 하고, 월급 조금 + 4대보험으로 편성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 1인 월 인건비는 2,330,350원(시급 11,150원x209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초과분 발생 시 대응 투자액과 별도로 대학에서 부담

16. 대응 투자는 월 10%를 지켜야하는지, 평균 10% 이상이면 되는가?(어느 달은 10% 미만이고 어느 달은 10% 초과가 발생)

- 월 기준이 아닌 정산 시 총 사업비 기준으로 90% 국고, 10% 대응 투자

17. 사업비(국고+대응)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가?

- 사업비로는 주휴수당만 지급가능 이 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교통비, 중식비 등 지급 불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교비로 대학에서 부담

□ 채용

1. 워크넷에 공고를 올리는 것은 필수인가?

- 일모아시스템에 모집공고를 등록하면 워크넷을 통하여 공고하게 됨

2. 기존 강의제작 도우미를 연장 채용해도 되는가?

- 본 사업은 연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적합자를 선발하여야 함

3. 선발에 나이 제한이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하는가?

-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만 19세~34세)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 절차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다른 연령대 지원자 선발 가능

4. 공고할 때 나이 기준이 들어가도 상관없는가?

- 본 사업은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과 함께 명시

5. 채용 근로자의 업무범위와 수준은?

- 교수설계, 디자인, 매체개발, 프로그래밍, 콘텐츠 관리 등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에 필요한 업무를 하고, 멀티미디어 자격증 소지자, 콘텐츠 기획 개발 제작 분야 등 원격교육 관련 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중 대학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채용

6. 비대면 원격수업 모형 연구를 학교에서 꼭 해야 하는가?

- 대학 교육과정 운영 지원의 사례로 안내한 것이며 필수 사항은 아님

7. 채용 근로자의 학력은 대졸이나 석사급 이상이어야 하는가, 휴학생, 무직자도 가능한가?

- 학력 부분에 제한은 없으나 대졸자 이상을 권고함. 대학에서 필요한 업무역량에 부합하는 학력을 자체적으로 정하면 됨. 다만, 재학생의 경우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은 겹치지 않도록 조정(재학생은 전일제 근무 불가)

8. 채용 자격 사항 중에 멀티미디어 자격증 유무와 유경험자의 기준이 있는가? 자격증이 없어도 채용 가능한가?

- 교육부, 대교협에서 마련한 세부기준은 없습니다. 자격증 소지 여부는 충분조건이며 필요조건은 아님. 제시된 지원 자격을 참고로 대학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채용

9. 채용 대상자 중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프리랜서를 채용해도 되는가?

- 가능.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은 필수

10. 최대 시급 내에서 자격이나 경력에 따라 시급을 차등 지급해도 되는가?(휴학생과 대졸, 대학원졸 등 학력 반영 시급 책정)

- 대학 상황에 맞게 내부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 가능

11. 7월~12월 채용도 가능한가?

- 가능

12. 동일 업무로 사업신청 전 충원된 인력의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

- 공개채용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는 동일한 업무로 사업신청 전 충원된 인력은 4월 1일부터 소급 가능. 단,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인력관리(시스템에 근로자 개인정보 등록 등) 필요,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 필수

13. 원격수업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이 가능한가?

- 단순 원격수업 모니터링은 어려움.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을 위한 목적이라면 가능.

14. 영상콘텐츠 제작, 모형개발 지원 이외의 업무는 담당할 수 없는 것인가?

-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을 위한 목적의 업무라면 가능

□ 계약

1. 계약직으로 발령을 해야 하는가? 조교, 연구원 등 계약형태는 학교에서 정할 수 있는가?

- 학교 상황에 맞춰 채용하되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 필수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

2. 계약직으로 채용해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6개월간 월별 일정액) 지급해도 되는가?

- 가능. 대학의 상황에 맞게 시급제 또는 월급제로 근로 계약 후 지급

□ 사업운영

1. 일모아시스템, e나라도움 시스템을 꼭 사용해야 하는가?

- 사업 운영을 위해서 해당 시스템 사용 필수

2.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보조금 계좌로 사용해도 되는가?

-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 활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 가능

3. 전년도 강의제작 운영 지원 온라인 원격 도우미 사업 시 사용한 계좌를 사용해도 되는가?

- 가능.

4. 지원대학 선정 이후 일모아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사업신청서 제출 후 채용을 진행해야 하는가?

- 사업신청서 제출 전이라도 ‘(대학) 불임의 위탁기관 일괄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대교협으로 제출→(대교협) 위탁기관(대학)등록→(대학) 일모아시스템 회원가입 및 권한승인 요청→(대교협) 승인’ 후 바로 사용 가능

5. 사업신청서 제출 후, 선정공고일은 언제인가?

- 5월 24일(월)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관리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월) 선정 안내 예정

6. 사업기간, 사업비 내에서 12월 종료시점까지 7-8개월 계약하여 운영하면 업무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적용 가능한가?

- 사업비 총액 내에서 시급을 조정하면 가능

7. 강의제작 운영 지원 온라인 원격 도우미 사업 운영 시 근무일지를 작성하였는데 이번 사업도 근무일지 작성하여야 하는가?

- 근무일지 작성 필수

8. 강의제작 운영 지원 온라인 원격 도우미사업의 경우 재택근무가 가능했는데 이번 사업에서도 가능한가?

- 재택근무 가능. 다만, 근무일지 등 근무에 대한 증빙 자료 필요

9. 지난 강의제작 운영 지원 온라인 원격 도우미 사업 진행시 e나라도움에서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계산하여 교부액을 보조금 계좌로 이체하였었는데 사업시작 시 전액을 한 번에 이체하고 집행관리를 해도 괜찮은가?

- e나라도움으로 사업비 관리시,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매월 집행 처리하여야 함

10. 근무기록표(일지 등) 이외에 사업 종료 시 연구결과보고서 등 실적 결과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는가?

- 실적 결과는 따로 만들어 제출할 필요는 없고, 사업결과보고서만 제출. 사업결과보고서에 사업 목적에 맞는 실적과 우수사례를 포함하여 작성

11. 작년 강의제작 운영 지원 온라인 원격 도우미 사업처럼 2022년 2월까지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한가?

- 불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비 집행 완료 필수

12. 수업콘텐츠 제작 지원 관련 일을 하되 여러 부서에서 근무해도 되는가?

- 가능. 대학 상황에 맞게 운영.

13. 각 대학별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유할 계획인 있는가?

- 내부 논의 후 별도 안내 예정